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14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서정욱, 윤여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가 2020. 2. 28. 피고에게 한 1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12. 27.경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여 2022. 12. 13. 기준 125,924,19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C는 합계 229,776,4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로부터 2020. 2. 12. 10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20. 2. 28. 위 1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채무변제행위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수령한 변제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도 피고가 C에게 실제로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후 16일 만에 이자 없이 원금만을 반환받는 등 C와의 금전관계에서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C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D 임야 3074㎡ 중 1/3 지분'을 대구광역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체납된 조세채무를 우선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으로 조세채무를 변제한 후 대구광역시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 것인데, 그렇다면, C의 '피고로부터의 금전 차용 → 조세채무 변제 → 매매대금 수령 →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실질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조세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고, 피고로부터의 금전 차용과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는 그 수단이거나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는 금전 차용 당시 이미 변제의 방법과 시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전제로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피고가 모녀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C가 2020. 2. 28. 피고에게 한 1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